

Ⅷ. 입학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방법

1. 합격증을 교부받고 입학수속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2. 미달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차 추가모집을 할 수 있으며 전형방식은 동일하다.

Ⅸ.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한다.